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

발의연월일: 2020. 6. 1.

발 의 자:이명수·박덕흠·김성원

홍문표ㆍ이양수ㆍ조경태

추경호 • 박성중 • 류성걸

김희국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우한폐렴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 도로 증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 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.

이에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과 영세 기업의 피해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 주요내용

가.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 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,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위 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차장이되도록 함(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).

- 나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전제로 '감염병 특별관리지역'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여 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함(안 제61조).
- 다.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 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받도록 함(안 제66조제1항 및 제3항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00038호)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단서 중 "외교부장관이"를 "외교부장관이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외교부장관(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)"을 "외교부장관(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)"을 "외교부장관(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), 보건복지부장관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에 한정한다)"으로 한다.

제61조 중 "지역"을 "지역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 제6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사회재난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2 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재난
- 4의2.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 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중앙대책본부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·제61조 및 제66조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대규모재난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)	제14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)
① · 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(이	③
하 "중앙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	
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, 중	
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	
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	
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	
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다	<u>_</u>
만,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<u>외교</u>	<u>위교</u>
<u>부장관이</u> , 「원자력시설 등의	부장관이, 「감염병의 예방 및
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	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
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	염병으로 인한 재난의 경우에
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	는 보건복지부장관이
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	
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	
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.	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	4
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	
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	
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,	

외교부장관(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원자력안전위 원회 위원장(방사능 재난의 경 우에 한정한다)이 차장이 된다.

#### 1. • 2. (생략)

⑤ • ⑥ (생 략)

제61조(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·재정상·금융상·의료상의 특별지원을할 수 있다.
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(제65조제1 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)

외교부장관(해외재난의 경우에
한정한다), 보건복지부장관
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
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으
로 인한 재난에 한정한다)
1.・2. (현행과 같음)
⑤・⑥ (현행과 같음)
제61조(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
원)
지역(「감염병의 예방 및
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2
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특별관
리지역을 포함한다)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
조 등의 지원) ①

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. 다만, 제39조제1항 (제46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 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 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## ② (생 략)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 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
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사회재난 중 「감염병의 예
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
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특별
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
<u>재난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
③
③
③
③
③
③
③

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 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 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5. ~ 9. (생 략) ④ ~ ⑦ (생 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4의2.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
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
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
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
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
5. ~ 9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현행과 같음)